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226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21. 원고에게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366,567,560원 중 133,818,182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4. B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318,754,400원, 농어촌 특별세 15,937,720원, 지방교육세 31,875,440원의 합계 366,567,56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매도인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20. 8. 19.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73467호)를 제기하였다가 2021. 1. 22.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2. 21.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내역을 반영하여 위 매매대금 87억 원을 55억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21. 2. 24. 피고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7,968,860,000원에서 5,059,769,091원으로 경정하여 133,818,182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1. 4. 2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취득 당시의 매매대금으로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21. 11.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22. 7. 19.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제 사유를 발견하였고, 매도인이 제기한 매매대금지급 청구 소송 계속 중 매도인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87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감액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13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그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5두4969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 등으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20.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20. 3. 20.에 취득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 이후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앞서 본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존재하였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행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고의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별지 1

-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도 ○○○시 [redacted]

[도로명주소] ○○○○○○도 ○○○시 [redacted]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각 전유부분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각 전유부분의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도 ○○○시 [redacted] 대 603 ㎡
2. ○○○○○○도 ○○○시 [redacted] 전 323 ㎡
3. ○○○○○○도 ○○○시 [redacted] 대 17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 각 전유부분의 건물의 번호 및 면적, 대지권의 비율 **

번호	건물의 번호	면적 (㎡)	대지권의 비율
1		66.149	943 분의 35.494
2		62.479	943 분의 33.525
3		49.994	943 분의 26.826
4		46.165	943 분의 24.771
5		59.742	943 분의 32.058
6		66.149	943 분의 35.494
7		62.479	943 분의 33.525
8		49.994	943 분의 26.826
9		46.165	943 분의 24.771
10		59.742	943 분의 32.058
11		66.149	943 분의 35.494
12		62.479	943 분의 33.525
13		49.994	943 분의 26.826
14		48.194	943 분의 25.860
15		70.274	943 분의 37.708
16		66.149	943 분의 35.494
17		62.479	943 분의 33.525
18		49.994	943 분의 26.826
19		48.194	943 분의 25.860
20		70.274	943 분의 37.708
21		66.149	943 분의 35.494
22		62.479	943 분의 33.525
23		49.994	943 분의 26.826
24		48.194	943 분의 25.860
25		70.274	943 분의 37.708
26		66.149	943 분의 35.494
27		62.479	943 분의 33.525
28		49.994	943 분의 26.826
29		48.194	943 분의 25.860
30		70.274	943 분의 37.708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별지 2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17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끝.